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01
----------	-------

발의연월일 : 2021. 9. 10.

발 의 자 : 고민정 · 강준현 · 고영인
김민석 · 김승남 · 김영배
김영주 · 김의겸 · 김정호
도종환 · 류호정 · 민병덕
오영환 · 우원식 · 윤준병
이규민 · 장경태 · 조오섭
진선미 · 천준호 · 최강욱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홍영표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건처리를 위한 기록으로 활용되는데

그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제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4항 중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열람 실태 및 그 영상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2. 아동학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열람 실태 및 그 영상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신설>	2. 아동학대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